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구자근 · 김상훈
송석준 · 김성원 · 박준태
최수진 · 안철수 · 송언석
박덕흠 · 김태호 · 신성범
김대식 · 조경태 · 서천호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,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‘농협개혁위원회’를 통해 선거 · 인사 · 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.

이에,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,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,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.

또한,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, 범죄협

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(안 제30조).
- 나. 조합의 이사·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,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(안 제48조).
- 다.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(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).
- 라.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(안 제144조).
- 마.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,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(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).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72조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·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·제61조(허위사실 공표죄)부터 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조합장은 2차”를 “임원은 2차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6호 중 “제164조제1항이나”를 “제146조제3항, 제164조제1항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23조제3호 중 “조합감사위원장”을 “조합감사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합장(이하 “회원조합장”이라 한다)이어야 한다”를 “조합장(이하 “회원조합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(이하 “독립이사”라 한다)는 9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3. 제127조의2제4항에 따른 독립이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5조의2제2항 중 “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”를 “3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5조의5제1항제4호 중 “조합감사위원장”을 “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6조제1항 중 “28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7조의2(독립이사의 권한 및 운영) ① 독립이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수행한다.

② 독립이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③ 중앙회는 독립이사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독립이사는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(이하 “독립이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⑤ 독립이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는 독립이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제130조제4항 중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”를 “독

립이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회장”을 “회장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.

1. 선거공보의 배부

2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
을 이용한 지지 호소

3. 공개 토론회의 개최

제144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”를 “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”을 “제1항에 따른 위원”으로, “선임한다”를 “선임하되,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”로 한다.

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46조제5항 중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, 그 대상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1조 단서 중 “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”를 “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”로 한다.

제172조제4항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

따른 죄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(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)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1항(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,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.

제3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0조제4항에 따른 이사는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. 다만, 중앙회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제명)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0조(제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172조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·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·제61조(허위사실 공표죄)부터 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임원의 임기)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설립 당시의 조합장,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1.·2. (생략)	제48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원은 2차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 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. 1. ~ 5. (생 략) 6. <u>제164조제1항이나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4조에</u> 규정된 개선(改選)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~ 12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제123조(총회의 의결 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 1.·2. (생 략) 3. 임원 및 <u>조합감사위원장의</u> 선출과 해임 4.·5. (생 략) 제125조(이사회) ① (생 략)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,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	② (현행과 같음) 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146조제3항, 제164조제1항 또는</u>----- ----- ----- 7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23조(총회의 의결 사항) 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조합감사위원회</u> <u>위원</u>----- 4.·5. (현행과 같음) 제125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---	---

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(이하 “회원조합장”이라 한다)이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③ (생략)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~ 11의2. (생략) <신설> 12. · 13. (생략) ⑤ ~ ⑦ (생략) 제125조의2(상호금융 소이사회) ① (생략)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과 이사로 구성하고,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 의장이 되며,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. ③ ~ ⑧ (생략) 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	-----조합장(이하 “회원조합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(이하 “독립이사”라 한다)는 9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 11의3. 제127조의2제4항에 따른 독립이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. · 13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25조의2(상호금융 소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3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25조의5(인사추천위원회) ①
--	--

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

② ~ ④ (생략)

제126조(임원)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,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6조(임원) ① -----

-----30명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7조의2(독립이사의 권한 및 운영) ① 독립이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수행한다.

② 독립이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③ 중앙회는 독립이사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독립이사는 이사회에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(이하 “독

제130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⑤ ~ ⑩ (생략)

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<신설>

립이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⑤ 독립이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는 독립이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제130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독립이사-----

-----.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-----회장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-----
-----.

⑫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.

1. 선거공보의 배부

2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다)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
제144조(위원의 선임 등)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조합,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(提請)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, 회계 또는 농정(農政)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

④ (생략)

제146조(회원에 대한 감사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

3. 공개 토론회의 개최

제144조(위원의 선임 등) ① ---
-----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-----

-----.

-----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-----

-----선임하되,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6조(회원에 대한 감사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-----

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,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61조(준용규정)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·제3항, 제17조, 제18조, 제20조제2항·제3항, 제21조제4항·제5항, 제21조의3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8조제1항(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)·제3항·제4항, 제29조제1항, 제30조(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),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

요청하여야
한다.

⑥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, 그 대상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illegible]

42조제3항 단서·제4항·제5항, 제43조제5항, 제45조제9항·제10항, 제48조제2항, 제49조(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), 제49조의2, 제50조(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), 제50조의2(제6항은 제외한다),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2조, 제53조, 제54조제1항·제2항제1호·제4항, 제55조, 제57조제4항, 제62조, 제63조제1항·제3항·제4항 전단 제65조, 제67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68조, 제69조, 제70조제1호,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,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역농협”은 “중앙회”로, “조합장”은 “회장”으로, “조합원”은 “회원”으로 보고, 제15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은 “제121조제1항”으로, 제17조제1항 중 “제15조제1항”은 “제121조제1항”으로, 제20조제2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.

원회”는 “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”로, 제52조제3항 중 “임원”은 “임원(회원조합장인 이사·감사위원은 제외한다)”으로,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“조합장”은 “회장·사업전담대표이사등”으로, “감사”는 “감사위원”으로, 제54조제1항전단 중 “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”는 “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”로, 제54조제1항 후단 중 “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”은 “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”으로,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임원”은 각각 “임원(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)”으로, 제57조제4항 중 “제1항제7호”는 “제134조제1항제5호”로, 제63조제4항 전단 중 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,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”은 “일반회계와 특

-----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
포함한다-----

[illegible]

제172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-----

-----. 다만, 제1항제
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죄
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----

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----- -----.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 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 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 거일 후 10년(선거일 후에 행 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)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.
---	--